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6143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2276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0. 1. 26 선고 2009가합50 판결

따름판례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0092, 2025다21009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강윤구

피고, 상고인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재범

3. D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전하은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나2276 판결

판결선고 2012. 4. 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 C의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장부지의 처분에 관하여 소집권자가 적법한 소집절차를 통하여 개최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였다거나 폐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다59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E가 다른 소송에서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취하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 D단체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가.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대하여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식회사가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함에는 같은 법 제434조가 정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영업의 양도란 같은 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겠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인 이 사건 공장부지를 처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상법 제374조에 의하여 그에 요구되는 원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어 그 효력이 없고, 위 상법의 규정은 효력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상대방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고의 정관과 상법 규정을 오해하거나, 주식회사 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회사 재산 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주주 전원이 위 매매계약 체결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에 합치하는 재산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가 영업을

중단하였다거나 폐지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또한, 피고 D단체의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을 탓하는 부분은 원심의 전권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다르지 않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일환 주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